의안번호	제 168 호
의 결	2015년 월 일
연 월 일	(제 339 회)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4월 13일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8

####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년 4월 13일

발 의 자:이종욱,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숙애,

박봉순의원(7인).

#### 1. 개정이유

제증명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함.
- 나. 배정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삭제(안 제2조)
- 다.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안 제4조제1항)
- 라. 수수료 면제사유 중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및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등을 감면사유에서 삭제(안 제5조제1항1호,2호 및 제2항)
- 마. 제증명 수수료 및 고등학교 전학·편입학 배정 수수료 무료화 (안 별표 1)
- 바.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안 별표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관계부서협의 : 협의 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1) 기 간 : 2015. 3. 17. ~ 2015. 4. 5.(20일간)

2) 제출의견 : 특이사항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의 내용을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재 방법으로 징수한다"로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등 수수료 징수 조례	<u> 징수 조례</u>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충청 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		
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1. 배정수수료</u>	<u>l. 시험수수료</u>	
<u>2. 시험수수료</u>	2. 검정고시수수료	
3. 검정고시수수료	3. 정보공개수수료	
4. 제증명수수료		
5. 정보공개수수료		
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별	$\sim$	
표 2와 같다. <u>다만, 외국문으로 발행</u>	〈단서 삭제〉	
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u>별표 1</u> 의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u>수수료는</u>	
사항으로 여러 건을 일괄하여 1통의	현금 또는 전자결재 방법으로 징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건마다, 같	<u>한다.</u>	
은 내용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경우에는 통마다, 여러 명을 열기하		
여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② (현행과 같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현 행	개 정 안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	
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	
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	
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다음 각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u>.</u>
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상</u> 필요에 따라 신청·발급하는 증	<u> 수급자</u>
<u>명</u>	
2.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	호대상자
시 응시원서 접수 시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	
른 보호대상자가 응시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제 받고자 그 자격을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	
<u>우</u>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	3. (현행과 같음)
이 있는 경우	
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제증명은 다	② 〈삭 제〉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u> </u>
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현 행	개	정	안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적용을받는 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3.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진학에 따른 제증명 4.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5.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 [별표 1]

##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 관련)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고
1.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 일마시어	1인당 1인당	25,000 35,000	
2. 검정고시수수료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1인당	10,000	

### 【별표 2】

### 정 보 공 개 수 수 료(제2조 관련)

고기기기사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b>열람</b>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b>사본(종이출력물)</b>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ul> <li>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li> <li>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li>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li> <li>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li>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li> <li>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li>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li> <li>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li>영화필름의 시청</li> <li>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li> <li>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li> <li>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li>사진필름의 열람</li> <li>1장 초과마다 50원</li> </ul>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를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 이 크 로 필 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ul> <li>○ 사본(종이출력물)</li>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2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150원</li> <li>○ 마이크로필름의 복제</li> <li>- 1롤마다 1,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li>○ 슬라이드의 복제</li> <li>- 1컷마다 3,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고케네샤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전자파일	<ul>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li> <li>- 1일 1시간 이내: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 청・청취</li> <li>- 1편: 1,500원</li> <li>·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li> </ul>	<ul> <li>○ 사본(종이출력물)</li>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li> <li>-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li> <li>-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li> <li>(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li>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 < 비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 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